

의안번호	2202406
의 퇴 인	박정현의원
회 답 일	2024. 10. 16.
추계번호	24D24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현행) 지방공무원 → (개정안)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2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안 제41조제2항)

- 개정안은 일반직공무원¹⁾으로 임용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한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령²⁾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

1) 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2)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의 경우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향후 채용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시기 및 채용 인원 등은 각 지방의회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곤란함
 - 참고로 2023.12.31. 기준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률은 98%이며, 시·군·구의회의 채용률은 83.8%임

[표 1] 시·군·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현황(2023.12.31.기준)

구 분	의원정수	2023년 정원	2023년 현원
시·군·구의회	2,988명	1,430명	1,199명

주. 시·군·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률은 83.8%임

자료: 행정안전부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표 2]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현황(2023.12.31.기준)

구 분	의원정수	2023년 정원	2023년 현원	
서울특별시의회	112명	56명	6급	55명
부산광역시의회	47명	23명	6급	9명
			7급	14명
대구광역시의회	32명	16명	6급	10명
			7급	6명
인천광역시의회	40명	20명	6급	19명
광주광역시의회	23명	11명	6급	11명
대전광역시의회	22명	11명	6급	11명
울산광역시의회	22명	11명	6급	8명
			7급	3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명	10명	6급	10명
경기도의회	156명	78명	6급	77명
강원도의회	49명	24명	6급	24명
충청북도의회	35명	17명	6급	17명
충청남도의회	48명	24명	7급	24명
전라북도의회	40명	20명	6급	10명
			7급	10명
전라남도의회	61명	30명	7급	30명
경상북도의회	61명	30명	6급	21명
			7급	4명
경상남도의회	64명	32명	6급	20명
			7급	12명
합 계	832명	413명	—	405명

주 1. 의원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외한 숫자임

2.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률은 98%임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6급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의회 등 일부 의회의 경우 6급과 7급으로 채용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